

RESEARCH ARTICLE

# Comparative study of three types of technology fee system for R&D performance under government R&D projects

JaeHoon Lee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Law, SungShin Women's University, Attorney at Lawyer,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JaeHoon Lee (jaehoonlee@sungshin.ac.kr)

## ABSTRACT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there were no definitions of key terms related to national R&D, which made it difficult for the public, including researchers, to clearly understand national R&D. With its enactment, however, unified definitions of national R&D projects, R&D tasks, and R&D 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ed, paving the way for fundamental improvements in the government's R&D system.

One of the definitions in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is that of "technology fees," which are the amounts paid by a licensee to an R&D organization in exchange for the right to implement R&D results. However, if a for-profit corporation collects this fee from a licensee, it must pay a portion of the fee to the government. In addition, there is a so-called "self-implemented technology fee" system under which the government collects a portion of the profits when a for-profit corporation generates profits through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product of a government R&D project.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s of three types of technology fees, namely general technology fees, so-called "government-paid technology fees," and "self-implemented technology fees," along with their regulatory history. It also notes that the regulations of each ministry or local government do not properly reflect the three types of technology fees, shows that these bodies continue to enforce under incorrect regulation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improvement.

## KEYWORDS

National R&D Innovation Act, National R&D projects, R&D projects, Technology fees, Government-paid technology fees, Self-implemented technology fee, Royalty



## Open Access

**Citation:** Lee JH. 2024. Comparative study of three types of technology fee system for R&D performance under government R&D projects.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19(2), 97-116.

**DOI:** <https://doi.org/10.34122/jip.2024.19.2.5>

**Received:** April 15, 2024

**Revised:** May 7, 2024

**Accepted:** May 29, 2024

**Published:** June 30, 2024

**Copyright:** © 2024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Funding:** The author received manuscript fees for this article from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원저

# 정부의 연구개발과제 상 연구개발성과 관련 기술료 3종 제도 비교 연구\*

이재훈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변호사

\*교신저자: 이재훈 (jaehoonlee@sungshin.ac.kr)

## 차례

1. 서론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일반기술료 징수 제도 분석
  - 2.1. 일반기술료 제도 개요
  - 2.2. 일반기술료 징수 제도 분석
3.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제도 분석
  - 3.1.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개요
  - 3.2.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제도의 연혁 분석
4. 소위 '자체실시기술료' 징수 제도 분석
  - 4.1. 직접 실시 행위 그 자체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하는 제도 신설
  - 4.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과 소위 '자체실시기술료' 의미 확정
5. 기술료 3종 개념 혼동 사례
  - 5.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상의 기술료 징수 규정
  - 5.2. 「농촌진흥법」 상의 기술료 징수 규정
  - 5.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상의 기술료 징수 규정
  - 5.4.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상의 기술료 징수 규정
6. 결론 및 시사점

## 국문초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이전에는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연구자를 포함한 일반인이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등의 통일된 정의를 마련하고, 정부의 연구개발과제의 체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정의 조항에는 '기술료'가 있다.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한편, 영리법인은 이와 같이 실시권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해당 기술료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소위 '정부납부기술료'라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이 정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사업화 촉진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 해당 수익의 일부를 정부가 징수하는 소위 '자체실시기술료' 제도도 운용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료 3종 제도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일반 기술료,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소위 '자체실시기술료'의 각 개념을 규정 연혁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각 규정이 이러한 기술료 3종 시스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잘못된 규정을 운용하고 있음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 용어의 혼동이 개선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기대한다.

## 주제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자체실시기술료, 로열티

## 1. 서론

최근 반도체 수출규제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과학기술은 단순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와 산업, 나아가 국가 간 동맹과 외교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강대국들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구체화하고 국익에 필수적인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분야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산업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원천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나 이러한 정부 투자를 통해 우수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기술 등을 발판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됐다. 2024년도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예산 규모는 26.5조 원으로 일반 재정사업 이관된 2.1조 원을 포함하면 실질 규모는 28.6조 원<sup>1)</sup>에 달한다.

위와 같은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은 법령과 규정에 근거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 예산을 득하고,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체화한다.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과제<sup>2)</sup>로 나뉘고 해당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sup>3)</sup>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한편, 기술입국으로 경제주권을 갖게 된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술패권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 변화에 직면했다.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관된 기술 지원과 집중된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기술 육성 체계는 부처와 관련 기술에 따라 개별법으로만 지원을 받아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선정, 협약, 수행관리, 연구개발비 지급·사용, 평가, 성과관리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어 2021.1.1.자로 시행<sup>4)</sup>중에 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이전<sup>5)</sup>에는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연구자를 포함한 일반인이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sup>6)</sup>이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등의 통일된 정의를 마련하고, 정부의 연구개발과제의 체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sup>7)</sup>가 되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만을 의미한다. 한편, 동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 중 일부는 기술료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거나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저자는 해당 사항이 기술료 개념에서 파생된 것이나 기술료 개념과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관점에, 이들을 '기술료 3종 제도'라고 정리하였다. 해당 표현에 관해 여러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린다.

- 1)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차세대 기술 확보 중심의 투자 방향으로 인하여, 2023년도의 31.1조원 예산에 비해 2024년도의 예산 규모가 이례적으로 삭감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도 정부 총 지출 대비 연구개발(R&D)투자 규모는 4%를 유지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 2024, 3면)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2020.6.9.자로 제정되어 2021.1.1.자로 시행되었다.
- 5) 「과학기술기초법」의 시행령 중 하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부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하여 주요 용어에 대해 정의 조항으로 두고 있었으나, 「과학기술기초법」에는 정의 조항이 없었고 현재도 「과학기술기초법」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등의 정의는 없다.
- 6) 이재훈, 유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STEP ISSUE PAPER(2020-09), 2020, 2면.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정의 조항에는 ‘기술료’가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의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sup>8)</sup>를 실시<sup>9)</sup>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관한 권리를 득한 자, 즉,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아닌 제3자인 실시권자가 이러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실시권을 득한 반대급부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실시권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게 되고 해당 금원을 기술료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① 일반적인 개념의 기술료(이하 ‘일반기술료’라고 한다.)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같이 주로 영리법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케 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이로 인하여 당해 영리법인의 사업화 촉진, 수익 창출을 지원<sup>10)</sup>하는 부처의 경우, 일반기술료와는 다른 ② 소위 ‘정부납부기술료’<sup>11)12)</sup>와 연구개발성과 자체 실시수익의 일부를 ③ 소위 ‘자체실시기술료’<sup>13)</sup>를 각 납부받는 독특한<sup>14)</sup> 형태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부처는 일반적 개념의 기술료보다는 소위 ‘정부납부기술료’와 수익의 일부를 납부받는 독특한 형태의 소위 ‘자체실시기술료’ 제도가 정책상 더욱 중요한 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제 이전부터 일반기술료와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소위 ‘자체실시기술료’를 모두 기술료라고 표현<sup>15)</sup>하다 보니, 결국 해당 3종 제도의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연구계 및 산업계에서 개념상 오해<sup>16)</sup>가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법령에서도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sup>17)18)19)</sup>하고 있다.

7) 이재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과학기술법학」, 제11권(2021), 5면.

8)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

9) 실시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도 실시에 대해서는 같은 의미로 해석하나, 실제로 실시가 의미하는 범위 자체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10) 정태현, “Bayh-Dole 체제와 대학에서의 기술이전 - 한국의 국가연구개발 지원 성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1호(2021), 221면.

11) ‘정부납부기술료’는 우리나라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실무에서는 오랜 기간 해당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해당 기술을 실시하려는 자가 기술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개념과 차이를 두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소위 ‘정부납부기술료’라는 표현을 활용하고자 한다.

12) 이재훈 외 5인,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법제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2019-2-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20, 46면에 따르면 정부납부기술료라는 표현은 법률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다.

13) “자체실시기술료”라는 표현도 우리나라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민간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 그 실시권에 상응하는 금원을 정부에 납부하게 되는 기술료를 일반기술료 및 소위 ‘정부납부기술료’와 구분하기 위해 ‘자체실시기술료’라고 부르곤 한다.

14) 이석래 외, “한국의 정부기술료 제도의 장기적 정책과정 분석: 다중흐름과 옹호연합모형 관점 분석”,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3호(2023), 225면.

15) 김경석, “과학기술기본법 상 기술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21집 제2호(2019), 49면에서는 정부가 세금과 같이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기술료제도라는 표현으로 명확하게 정부납부기술료를 짚어내고 있으나, 전수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과 법」, 제2권(2011), 109면, 김윤정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6집 제2호(2015), 323면, 윤병한 외 3인, “공공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지분율제도 및 기술료제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2019), 73면 등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은 소위 ‘정부납부기술료’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일반기술료와는 다른 개념에 대한 고찰이라 할 수 있다.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7면에서도 법령에는 없는 소위 ‘정부납부기술료’라는 표현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내에서 기술료와 함께 특별한 설명 없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제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일반 기술료에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아니므로, 기술료를 징수한다고 하나, 이는 일반기술료의 개

이에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료 3종 제도, 즉 연구개발소유기관이 징수<sup>20)</sup>하는 일반기술료와 함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 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이 납부하는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및 소위 ‘자체실시기술료’의 개념과 제도를 연구개발과제 수행 절차 및 규정 연혁 변화와 연동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일반기술료 징수 제도 분석

### 2.1. 일반기술료 제도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술료는 로열티(Royalty)와 같은 말<sup>21)</sup>이다. 로열티란 다른 사람의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값<sup>22)</sup>이다. 즉, 지식재산권이나 특정 기술, 노하우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이나 특정 기술 등의 권리를 제공한 자에게 그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도 위와 같은 일반기술료 개념을 그대로 도입하였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정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관리 절차 중에서의 기술료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우선 연구개발과제의 전체적인 수행 과정을 살펴보면 기술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 이해가 쉽다. 이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2. 일반기술료 징수 제도 분석

#### 2.2.1.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급(A)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수행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을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고,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 수행 협약을 맺는다.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함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이하 ‘공공연구

념이 아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도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마찬가지로 일반기술료의 개념이 아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19) 권성훈, “연구개발수익의 납부제도의 변화와 주요 쟁점”, 이슈와 논점(제1810호), 2021, 4면에서는 용어 혼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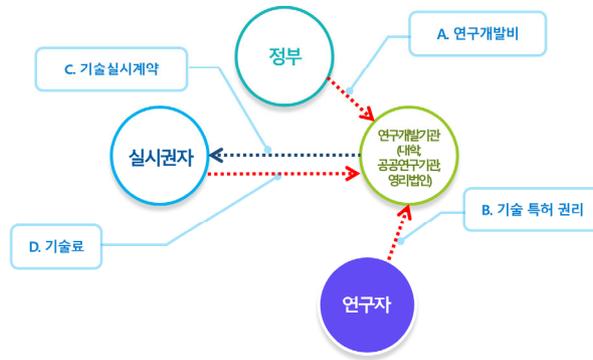
20) 징수의 사전적 의미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조세, 수수료,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 거두어들이는 일”이나 (국립국어원, “징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4. 3.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에서 기술료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3의 실시권자에게 ‘징수’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징수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21) 김해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변천과정 고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3호(2010), 90면.

22) 국립국어원, “로열티”,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4. 3. 10.

기관'이라 한다)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이하 '영리법인'<sup>23)</sup>이라 한다)도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주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영리법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기술료 구조도>



### 2.2.2. 연구개발성과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B)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체인 연구개발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따라 공모, 선정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sup>24)</sup>이 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인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게 되면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득하고 이때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sup>25)</sup>이라고 부르게 된다.

한편,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인 자연인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이는 소속 연구개발기관이 소유<sup>26)</sup>하게 된다. 「발명진흥법」 제13조<sup>27)</sup>에 따른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법리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상 일반 상법상의 민간기업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등이 포함되나, 이는 일반적인 공공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민간기업과 같이 자체 수익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영리법인으로 본다. 이와 같다.

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이하 생략)

25) 1개의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곧 주관연구개발기관이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여 소유하게 되면, 연구개발기관이 곧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되는 것이다.

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7) 「발명진흥법」 제13조는 2024. 2. 6.자로 개정되었으며, 2024. 8. 7.자로 개정된 사항이 시행될 예정인바, 현행 규정과 시행 예정 규정은 각 다음과 같다.

(2024. 8. 7. 자 이전 시행 중인 조항) 「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2024. 8. 7. 자부터 시행 예정인 조항) 「발명진흥법」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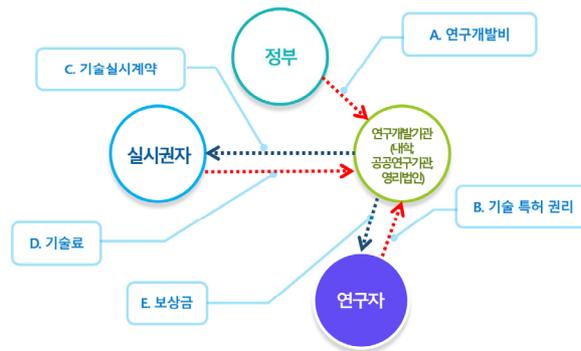
### 2.2.3.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제3자의 실시(C)와 기술료 징수 의무(D)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제3자가 있다면 해당 제3자에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게 하고 이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식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sup>28)</sup>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제3자, 즉 실시권자 간의 기술실시계약은 사적(私的) 계약이다. 따라서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개별 기술실시계약 상의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액의 적정성, 납부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규제<sup>29)</sup>하지 않는다. 물론 이는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연구개발과제인 만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실시를 체결하는데 있어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특정 기업에게 국가 예산을 활용한 결과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사실상 특혜가 될 수 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에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2.2.4. 연구자 보상금 제도(E)와 기술료 사용 용도의 제한 규정

<그림 2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기술료 구조도 - 보상금 포함>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권리는 연구개발기관에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 실시권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면 기술료의 소유권도 연구개발기관에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적절하게 해당 연구를 수행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보상하여, 지속적으로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것은 개별 연구자들인바, 「발명진흥법」 상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규정의 범위<sup>30)</sup>를 적용하는 차원에서 해당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5항<sup>31)</sup> 및 동법 시행

28) 바로 해당 부분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의 일반기술료 징수에 관한 부분이다.

29) 현실적으로 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술료 금액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도 없다.

30)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2. 11. 15.>

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령 제41조제2항<sup>32)</sup>에 마련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해당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별도로 운용토록 규정<sup>33)</sup><sup>34)</sup>하고 있다.

정리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자인 실시권자에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 실시 내용이나 실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자에게 무상으로 기술이전 등을 하는 특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고, 기술료 징수에 대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기술실시계약 상의 기술료 징수액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징수한 기술료에 대한 사용 용도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등으로 법률을 통해 강제함으로써 연구자를 위한 최상의 연구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함께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sup>35)</sup>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3.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제도 분석

#### 3.1.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개요

##### 3.1.1.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조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이 기술료에 관한 사항이라면, 동조 제2항이 소위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사항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주체는 앞서 설명한 대로 대학, 공공연구기관, 영리법인으로 크게 구분되고, 이들은 연구개발성과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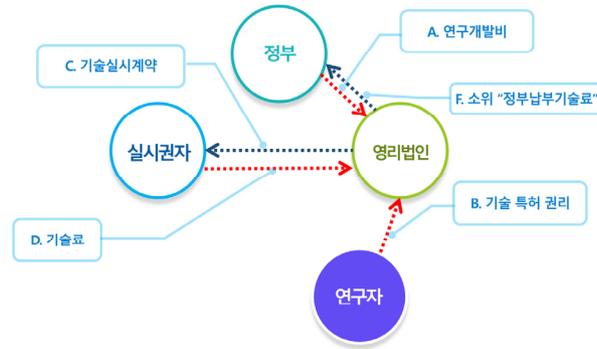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에서도 「상법」 제169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3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를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3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34)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연구자의 보상금 제도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별로 연구자의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대부분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각 운영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별로 연구자의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구조인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별로 지급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
- 35) 다만, 영리법인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의무 사용, 보상금지급기준 마련 등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sup>36)</sup>인 영리법인만을 주체로 두고 있다. 즉,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제도는 현재 영리법인에만 해당하는 규정이다.

### 3.1.2. 소위 ‘정부납부기술료’의 개념(F)

<그림 3 영리법인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구조도>



영리법인도 정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영리법인에 원칙적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서의 해당 영리법인이 제3자인 실시권자에게 기술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을 포함한 일반기술료 징수 및 기술료 중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제3자인 실시권자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에 해당 연구개발과제<sup>37)</sup>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실무에서 소위 ‘정부납부기술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중략)...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중략)...를 납부하여야 한다.

## 3.2.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제도의 연혁 분석

### 3.2.1. 구(舊)「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상의 일반기술료 개념 우선 신설

1973. 1. 28. 자로 구(舊)「기술개발촉진법」이 시행<sup>38)</sup>되었는데, 이 법은 산업기술의 자주적 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촉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고, 국내기술의 수출을 진흥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3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축약하고 있다.

37) 법 조문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연구개발과제가 더 정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연구개발과제로 바꿔서 언급하였다.

38) 1972. 12. 28. 자 제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여 소관하는 법률이었다. 구(舊) 「기술개발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2011. 5. 24.자로 제정하면서 동시에 폐지되었다.

1981. 12. 31. 자로 당시 과학기술처장관이 핵심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하고, 이에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sup>39)</sup>하였다.

구(舊)「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1973. 9. 22. 자로 처음 시행되었을 때에는 기술료에 관한 규정은 공백으로 있었으나, 이후 1982. 5. 29. 자로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구개발기관과 제3자의 실시권자와의 과제 협약의 체결방법 및 내용을 정하는 사항에 최초로 신설되었고 이때 ‘기술료’라는 표현이 함께 조문에 제정된다.

1982. 5. 29. 자 개정 및 시행

구(舊)「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출연금등의 사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청에 의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으로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품질향상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3조의3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한편, 1982. 5. 29. 자 개정 및 시행된 구(舊)「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제3항 조문에서의 기술료는 앞서 설명한 일반기술료라 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sup>40)</sup>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신청에 의하여...(중략)...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문 상으로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나, 그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이용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이용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제3자, 즉 실시권자라 할 수 있다.

즉, 실시권자인 이용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연구개발성과 실시에 의해 신제품 생산 또는 원가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게 되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에 기초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sup>41)</sup>이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술료는 제3자인 실시권자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기술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일부 요건을 달리한다.

### 3.2.2. 구(舊)「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상의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신설

구(舊)「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1994. 5. 30. 자로 전면 개정 및 시행이 되며, 소위 ‘정부납부기술료’의 개념이 처음으로 법령에 언급된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제외하고 기업부설연구소<sup>42)</sup>, 산업기술연구조합(제3호) 등에 대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일정 비율을 전문기관<sup>43)</sup>

39) 구(舊)「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과학기술처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3. 산업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같다.

41) 해당 조항을 소위 ‘정부납부기술료’의 근거라고 기술하기도 하는데, 해당 조항은 일반기술료 징수에 대한 근거일 뿐이다(김해도, 오동훈,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KISTEP ISSUE PAPER, 2014, 13면).

42) 영리법인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리법인 내 설치하는 연구소형태를 의미한다. 기업부설연구소

1994. 5. 30. 자 개정 및 시행  
 구(舊)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9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등)  
 ⑤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를 제4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일정비율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납부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 및 촉진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에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데<sup>44)</sup>, 이것이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근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 3.2.3. 구(舊)「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상의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변천

#### 3.2.3.1. 대학, 공공연구기관, 영리법인 모두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이전에도, 중앙행정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구(舊)「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sup>45)</sup>이 2002. 3. 20. 자로 시행되어 운용되었다. 다만, 당시 다양한 부처의 여러 연구개발과제 관리 규정을 통합하다 보니, 구(舊)「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제도가 적용<sup>46)</sup>된다.

구(舊)「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의 정부출연금 상당액<sup>47)48)</sup> 50% 이상을 해당 소관 부처(전문기관이 수납을 대행)에 납부하여야 하고, 영리법인 아닌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 이상을 소관 부처에 납부토록 하고 있었다.

가 곧 영리법인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 43) 현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의 전문기관과 같은 형태로, 부처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납부하라는 것은 해당 부처에서 직접 소위 ‘정부납부기술료’를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해당 납부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긴 것이다.
- 44) 구(舊)「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내용 생략)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중소기업의경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45) 「과학기술기초법」의 시행령 형태(별도 시행령)로 2001. 12. 19. 자로 제정되어 2002. 3. 20. 자로 시행되었으나, 해당 내용이 시행령으로 제정되다 보니, 타 부처 소관 법률과의 우선 적용 관계에서 상충이 발생하였고, 결국 연구개발과제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이 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는 폐지되었다.
- 46)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특정연구개발사업’ 내의 연구개발과제에만 소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받다가, 해당 사항이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는 기존에 납부 의무가 없었던 소위 ‘정부납부기술료’를 영리법인과 함께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 47) 정부가 연구개발비 8천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총 1억 원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가 실시하여 총 1,000만원의 기술료를 징수했다면, 연구개발비 총 1억 원 중 8천만 원인 정부출연금 비중이 80%이므로 기술료도 총 1,000만원 중에서 정부출연금 상당액은 비중 20%인 800만원이 된다. 그 800만원의 30%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최소 납부금액은 240만원이 된다.
- 48) 사실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의 상당액”이 아니라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이 더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해당 조문은 2005. 3. 8. 자로 개정하여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으로 수정된다.

2002. 3. 20. 자 시행

구(舊)「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기술료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3.2.3.2. 영리법인만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이후, 소위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비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구(舊)「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2005. 3. 8. 자로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규정을 영리법인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30% 이상,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에는 20% 이상의 소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도록 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실제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득하고 이에 따라 소위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하면, 정부는 해당 금전을 통해 부처가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 및 촉진에 순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소위 '정부납부기술료'의 목적 중 하나이다. 그런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3자인 실시권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고 해당 기술료를 직접 연구개발기관이 기관 내에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도록 사용 용도만 제한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우수연구 등이 순환될 수 있는 구조도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가 관리비용에도 더 효율적이기도 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권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다시 해당 소관 부처에 소위 '정부납부기술료'로 납부하고, 결국 해당 예산은 다시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에게 재차 연구개발과제로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2008. 5. 27. 자로 구(舊)「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이 재차 개정되면서 소위 '정부납부기술료'에 납부 의무에서 대학을 먼저 제외하게 된다.

2008. 5. 27. 자 시행

구(舊)「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기술료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며, ... (중략)...**

공공연구기관도 직접 징수한 기술료에 대한 사용 용도를 제한하여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구(舊)「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2008. 12. 31. 자로 다시 개정하여 영리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무 자체를 폐지하는데 이르렀다.

2008. 12. 31. 자 시행

구(舊)「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 이상: 전문기관에의 납부**  
(이하 생략)

## 4. 소위 '자체실시기술료' 징수 제도 분석

### 4.1. 직접 실시 행위 그 자체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하는 제도 신설

#### 4.1.1. 개요

한편, 2008. 12. 31. 자로 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소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형태로 규정이 개정된 후, 정부가 납부받은 소위 '정부납부기술료'가 급감하게 된다. 그 이유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소위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가장 큰데, 사실 영리법인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이유는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업에 신제품을 생산하여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리법인은 연구개발과제로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기업 스스로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자체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고, 결국 영리법인이 자신의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기술료를 징수받는 경우 자체가 드물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서 제3자에게 기술을 실시하게 하여 받는 기술료 중 일부를 소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에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여, 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당해 영리법인이 직접 실시하여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경우, 해당 부처<sup>49)</sup>는 그 연구개발성과 실시 대가로서 해당 영리법인에 수익의 일부를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舊)「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으로 신설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 실시에 대한 기술료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영리법인은 정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성과 실시권자인 제3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고 해당 기술료 중 일부 범위를 정하여 해당 부처에 납부해야 하는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제도가 적용된다. 이와 달리, 제3자가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이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님에도 영리법인은 연구개발성과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소위 '자체실시기술료'를 징수하는 새로운 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2008. 12. 31. 자 시행

구(舊)「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기술료의 징수) ④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영리법인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중 보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4.1.2. 직접 실시에 따른 기술료 징수 개념의 변천

기술료와 소위 '정부납부기술료'의 용어 혼동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때에 새롭게 소위 '자체실시기술료'를 징수하다 보니, 부처마다 이 기술료 3종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늘게 된다. 가령,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때 소위 '자체실시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보니, 실무적으로는 직접 실시 이전, 즉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되기도 전에 영리법인에 미리 소위 '자체실시기술료'를 징수<sup>50)</sup>하기도

49)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문기관이 해당 부처의 소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50) 영리법인이 결과물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수익이 난 경우가 아니라, 영리법인이 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면 소위 '자체실시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였다. 사실상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대가를 납부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인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舊)「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모법인 구(舊)「과학기술기본법」을 2010. 2. 4. 자로 개정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면서, 2012. 7. 1. 자로 구(舊)「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재차 개정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영리법인에 대한 소위 ‘직접실시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2010. 2. 4. 자 시행

구(舊)「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2012. 7. 1. 자 시행

구(舊)「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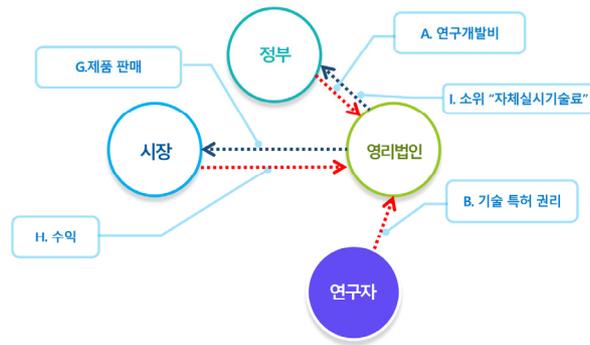
이 개정을 통해,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성과를 자체 실시하는 경우, 실제 실시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 따라 정부가 징수하는 소위 ‘자체실시기술료’가 법률에 근거하게 된다. 한편, 영리법인이 실제 시장에 제품 등을 판매하여 해당 수익이 발생한 것을 근거로 소위 ‘자체실시기술료’를 징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 으레 자체 실시를 한다고 보고 지급한 연구개발비 금액을 기준으로 소위 ‘자체실시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도 병행 유지된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의 병행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제 창출하고 이를 직접 실시하고 이후에 매출액이 확정된다면, 이후에 소위 ‘자체실시기술료’를 징수까지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지급한 연구개발비에 따라 비율을 정해서 소위 ‘자체실시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과 소위 ‘자체실시기술료’ 의미(I) 확정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가 소위 ‘자체실시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에는 국회 등에서 반대 입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소위 ‘자체실시기술료’는 OECD 주요국 중 한국과 이스라엘만 운영 중인 제도로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으로 귀속됨에도 그 기술을 실시했다고 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영리법인으로부터 소위 ‘정부납부기술료’로 납부하는 금액과 함께 소위 ‘자체실시기술료’로 징수한 금액이 2016년 기준 2,000억 원에 달하는 등 이를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 자원 확보 및 연구개발 재투자가 수월하다는 면에서 해당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상존하였다.

<그림 4 영리법인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수익에 대한 사용 구조도>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서의 영리법인이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이유는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업에 신제품을 생산하여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에 더 방점을 두게 된다. 즉, 영리법인은 기존 제품을 개량하여 원가 절감을 할 수도 있고, 품질 자체가 향상되어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기존 제품에 비해 수익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크다. 영리법인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인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에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당해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활용하여 시장(market)에 해당 제품등을 판매(G)하여 수익(H)을 극대화하는데 활용하게 된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의 구(舊)「과학기술기본법」 및 구(舊)「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성과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자체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수익이 발생되면, 해당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 규모를 파악하고 해당 증가된 수익의 일부를 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기술료로 징수(I)하는 것으로 규정을 제정하게 된다.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해당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성과를 스스로 직접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수익의 일부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영리법인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서 제3자에게 어떠한 기술적인 성과를 제공하지 않았고, 단지 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창출된 수익의 전제가 되는 연구개발성과가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된 과제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 수익의 일부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영리법인 즉,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① 제3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①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② 직접 실시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서로 다른 내용이 하나의 조항에서 운영 중이다.

## 5. 기술료 3종 개념 혼동 사례

### 5.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상의 기술료 징수

#### 규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5조(기술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지원된 출연금의 범위에서 해당 출연금의 일부 또는 매출액의 일부를 징수한다.  
(중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상에서는 별도의 기술료 정의는 없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해당 국가연구개발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므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상의 기술료 정의 여부 존재와 관계없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하 생략)

이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는 기술료의 징수라는 표현을 조문명어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것은 일반기술료의 의미가 아니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처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실시하는 그 자체에 대해 소위 ‘자체실시기술료’를 징수한다는 취지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통해 더 명확해진다. 해당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지원된 출연금(연구개발비)의 범위에서 해당 출연금(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기술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남아 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신설과 함께 소위 ‘직접실시기술료’의 의미 내에서 제외된 개념이기도 한다. 따라서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게 소위 ‘직접실시기술료’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춰 개정이 필요하다.

### 5.2. 「농촌진흥법」 상의 기술료 징수 규정

「농촌진흥법」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을 통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하여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단체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농촌진흥법」 제13조는 부처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3자와의 실시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법」은 일반기술료 규정, 즉,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3자와 실시계약을 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고, 해당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해 부처에 보고하는 등의 기본적인 규정은 없으나, 소위 ‘정부납부기술료’와 직접 실시 때 수익의 일부를 부처가 징수하는 소위 ‘직접실시기술료’는 해당 개념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다만, 「농촌진흥법」은 해당 사항에 대한 납부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이는 영리법인에게 부처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납부를 요청한다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개선이 필요하다.

### 5.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상의 기술료 징수 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한 연구개발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그가 지원하거나 출연한 연구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제2는 부처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이후, 그 자체로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를 기술료)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처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게 납부받는 것은 소위 ‘정부납부기술료’이고, 직접 실시의 경우에 그 수익의 일부를 납부받는 것이 소위 ‘직접실시기술료’인데, 해당 규정에서는 소위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위 ‘직접실시기술료’를 일반기술료처럼 ‘기술료’로 칭하고 있다. 기술료에 대한 의미를 해당 분야 연구개발기관이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해서 발생한 수익의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리법인이 정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였는데, 해당 수익의 전부를 소위 ‘직접실시기술료’로 징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 5.4.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상의 기술료 징수 규정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8조의2(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금의 일정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전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고 한다)를 통해 과학기술의 혁

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과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조례 제2조제6호에서는 기술료를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기술료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경기도 조례 제8조의2(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는 위와 같은데, 경기도 조례 정의 조항에서 사용하는 기술료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조례 제8조의2는 영리법인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가 해당 영리법인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즉 지원금에 대한 일정액을 기술료로 징수한다는 취지이다. 즉, 소위 ‘직접실시기술료’이다. 도리어 일반기술료에 관한 규정이 경기도 조례를 포함한 하위 규정에 언급이 없으므로 일반 기술료 징수에 대한 규정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와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및 소위 ‘자체실시기술료’ 각 제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개별 제도의 연혁을 상세히 연구하여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기술료 3종 제도가 어떠한 변천사를 겪었는지를 확인<sup>51)</sup>해볼 수 있었다.

특히, 기존 기술료 개념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로서,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성과를 스스로 창출하고 해당 법인 소유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통해 창출된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정리하였다.

연구를 통해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일반기술료 개념과 함께, 해당 기술료를 제3자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징수하는 기술료 중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그리고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소위 ‘자체실시기술료’ 제도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부처 규정은 기술료 3종 제도의 각 개념을 혼동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산업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원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에 강성한 반도체, 배터리, 5G 등의 기술을 제외하고 다른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특히 향후 기술패권 경쟁의 주축이 될 양자, 수소, AI 기술력은 최고 기술국들의 약 70%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이와 같은 기술패권 시대에 과학기술분야 전반에 대하여 혁신을 요구하는 시점임에도 정부의 연구개발과제에서의 소위 ‘정부납부기술료’가 정부의 연구개발 재원 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모순되면서도 복잡한 해당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단순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갑작스럽게 폐지하는 것도 문제라는 점에는 공감한다. 선진적인 과학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규제 완화와 함께 제도 변화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법적 시스템 정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기술료와 소위 ‘정부납부기술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당장 필요한 개선 부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기술료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수행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현재 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 용어의 혼동이 개선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기대한다.

51) 후속 연구 등을 통해 해외의 정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기술료 제도를 추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References)

### 학술지(국내 및 동양)

- 김경석, “과학기술기본법 상 기술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21집 제2호(2019).
- 김윤정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6집 제2호(2015).
- 김해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변천과정 고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3호(2010).
- 이석래 외, “한국의 정부기술료 제도의 장기적 정책과정 분석: 다중흐름과 옹호연합모형 관점 분석”,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3호(2023).
- 이재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과학기술법학」, 제11권(2021).
- 윤병한 외 3인, “공공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지분율제도 및 기술료제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2019).
- 전수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과 법」, 제2권(2011).
- 정태현, “Bayh-Dole 체제와 대학에서의 기술이전 - 한국의 국가연구개발 지원 성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1호(2021).

### 인터넷 자료

- 국립국어원, “징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4. 3. 10.
- 국립국어원, “로열티”,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4. 3. 10.

### 연구보고서

- 이재훈 외 5인,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법제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2019-2-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20.

### 기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2023.
- 권성훈,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변화와 주요 쟁점”, 이슈와 논점(제1810호), 2021.
- 김해도·오동훈,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KISTEP ISSUE PAPER(2014-03), 2014.
- 이재훈, 유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STEP ISSUE PAPER(2020-09), 2020.